

『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우진석 의원 외 22인

2. 제안이유

-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·리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·리장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근거를 신설함(안 제6조)

4. 참고법령

-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- 공직선거법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·리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·리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과
-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및 교육훈련·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·리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·연수 등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새마을 남·여지도자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